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61
----------	------

2014년 2월 24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13년 11월 21일
- 나. 발 의 자 : 오봉수 의원 (찬성자 17명)
- 다. 회부일자 : 2013년 11월 26일
- 라. 상정일자 : 제25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2014년 2월 19일 상정, 수정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오봉수 의원)

○ 제안이유

서민들의 정보유통의 근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보도 상 생활정보지배포대가 서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정보와 사회적 편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점용료율(0.02)이 이와 유사한 보도상 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점용료율(0.007)에 비해 약 3배나 높아 형평에 맞지 않는 바, 보도 상 영업시설물의 점용료율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 제3조 별표 1 제7호 중 점용료 산정기준을 생활정보지통합 배포대의 경우 현행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에서 0.007로 조정 (안 별표 1 제7호)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개요

- 본 안은 보도 상에 있는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 부과하고 있는 도로점용료율이 이와 유사한 보도상영업시설물과 노점의 점용료율(0.007)에 비해 3배나 높아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들의 점용료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과거 생활정보지와 무가지의 배포는 보행자가 많은 보도를 중심으로 보도 상에 임시 설치하는 합성수지 개별배포대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아 단속(수거) 대상이었음.
- '08. 5. 29일 동 조례 별표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의 점용료

규정이 설치되면서 합법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당시 시장이 제출한 원안의 도로점용료율은 토지가격의 0.05배였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0.02로 수정됨.

[표 1] 2008. 5. 29일 개정 당시 별표 현황

원 안				수 정 안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7.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노점·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용료율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현행 조례 별표 현황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

○ 개정안 취지는 서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보도 상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 대해 도로점용료의 일부를 경감시

켜줌으로써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정보 소외 계층인 서민들이 생활정보에 대해 좀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 이러한 취지의 근거는 최초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조례에 규정 하면서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와 동일한 점용료율을 적용하였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보도상영업시설물과 노점에 대한 점용료율이 0.007로 낮아진 반면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의 점용료율은 0.02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임.
- 인터넷의 발달, 모바일 기능의 혁신과 일반화, 서민 경기의 위축 등 급변하는 경기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정보제공 매체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생활정보지는 날이 갈수록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임에도 고령자 등 정보 소외 계층에게 생활정보의 통로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다만 서민에게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이긴 하지만 영리목적의 기업이라는 점과 아직도 과거에 설치했던 구형 합성수지 배포대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어 디자인 개선 취지에도 반감되는 등 서울시 정책에 적극 따르고 있지 않다는 점, 점용료가 낮아짐으로써 통합배포대 관리가 소홀해 지거나 그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세입이 1억 51백만 원에서 9천 8백만 원 정도인 64.9%가 감소한다는 점 등 부정적 요소도 있음.
- 참고로 도시안전실은 본 개정안에 대해 타 상업용 점용시설의 점용료율에 이와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입

장이고, 강남구는 가로시설물 정비방향과 배치된다하여 현재 점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어 통합배포대가 유일하게 설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한편, 통합배포대 공동 운영에 참여한 업체들 중 특정 업체가 내부협약에 따른 도로점용료 분담을 기피하면서 대표운영사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종합의견

- 저소득 서민들이 무료로 생활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채널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공익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시민 보행권과 도시미관적인 측면, 그리고 타 점용물의 점용요율에 미치는 과급효과 등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면밀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 현재,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용료를 정액제로 부과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서울시의 세수감소 및 유사 점용물에 대한 점용료 인하 민원이 지속될 우려가 있어 원안의 점용료율을 일부 조정하여 토지가격의 0.007에서 0.01로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61
----------	------------

제안년월일 : 2014년 2월 19일
제안자 : 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개정안의 취지는 살리되 서울시의 세수감소 및 유사 점용물에 대한 점용료 인하 민원이 지속될 우려가 있어 원안의 점용비율을 일부 조정하여 토지가격의 0.007에서 0.01로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안 별표 1의 제7호 중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의 점용료율을 0.007에서 0.01로 조정함 (안 별표 1의 제7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1의 제7호 중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의 점용료를 “토지가
격에 0.007을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
액”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점용물의 종류</th> <th style="width: 15%;"></th> <th style="width: 70%;">점 용 료 (단위 : 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vertical-align: middle;">7.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td> <td>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td> <td>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td> </tr> <tr> <td>노점</td> <td>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td> </tr> <tr> <td>생활정보지통합 배포대</td> <td>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td> </tr> <tr> <td>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td> <td>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td> </tr> <tr> <td>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td> <td>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td> </tr> </tbody> </table>	점용물의 종류		점 용 료 (단위 : 원)	7.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통합 배포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p>【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점용물의 종류</th> <th style="width: 15%;"></th> <th style="width: 70%;">점 용 료 (단위 : 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vertical-align: middle;">7.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td> <td>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td> <td>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td> </tr> <tr> <td>노점</td> <td>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td> </tr> <tr> <td>생활정보지통합 배포대</td> <td>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td> </tr> <tr> <td>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td> <td>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td> </tr> <tr> <td>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td> <td>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td> </tr> </tbody> </table>	점용물의 종류		점 용 료 (단위 : 원)	7.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통합 배포대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p>【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점용물의 종류</th> <th style="width: 15%;"></th> <th style="width: 70%;">점 용 료 (단위 : 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vertical-align: middle;">7.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td> <td>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td> <td>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td> </tr> <tr> <td>노점</td> <td>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td> </tr> <tr> <td>생활정보지통합 배포대</td> <td>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td> </tr> <tr> <td>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td> <td>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td> </tr> <tr> <td>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td> <td>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td> </tr> </tbody> </table>	점용물의 종류		점 용 료 (단위 : 원)	7.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통합 배포대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점용물의 종류		점 용 료 (단위 : 원)																																										
7.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통합 배포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점용물의 종류		점 용 료 (단위 : 원)																																										
7.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통합 배포대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점용물의 종류		점 용 료 (단위 : 원)																																										
7.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통합 배포대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7호 중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의 점용료를 “토지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별표 1 제7호의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점용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개정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